2018년도 제23차

금융통화위원회(정기) 의사록

- 1. 일 자 2018년 12월 6일(목)
- 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- 3.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(총재)

이 일 형 위 원

조 동 철 위 원

고 승 범 위 원

신 인 석 위 원

윤 면 식 위 원(부총재)

임지원 위원

4. 결석위원 없음

5.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임 형 준 부총재보

허 진 호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

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

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

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

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

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현 기 공보관

성 광 진 의사팀장

## 6. 회의경과

## <의안 제39호 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폐지규정(안)>

(1) 담당 부총재보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으로「한국은행법」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.

## (2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## 의결사항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폐지한다.

<붙임>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폐지규정(안)